

「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5. . .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‘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’ 라는 문구는 상인 개개인과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. 상인 개인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자 문구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5조제1항의 문구 수정
 - 당 초: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6조에 따른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
 - 변 경: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6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.

○ 안 제6조 각 호의 외 부분의 문구 수정

- 당 초: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변 경: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「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” 를 “상인조직의 대표자” 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” 를 “상인조직의 대표자” 로 한다.

